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599
----------	-----

제출년월일 : 2000년 2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사유

- 제천시가 특허 출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박다리와 금붕이」 문화관광 캐릭터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범위 및 계약 등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상표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천시 캐릭터 상표의 사용에 관한 일정기준, 사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상표권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재정 확충에 기여
 -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계약체결, 일정 사용료 징수
 - 공공기관 또는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용료 면제 및 비도덕적 사용과 제천시 위상에 손상이 될 경우 상표권 사용의 제한
 - 전용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한 동일상표의 제3자 사용을 금지하여 전용사용권의 보호
 - 제천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등록 출원전에 제천시장과 협의
 - 캐릭터 사용 전담부서 지정으로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캐릭터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
 -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상품을 제작 직접, 위탁판매를 실시 시재정 확충

- 제천시 캐릭터의 인지도 제고와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 및 이미지 제고 등 침체된 관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정기간 사용료 면제

3. 관계법령 :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제52조(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덧붙임 :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소유한 캐릭터 상표(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라 함은 제천시가 상표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5. "통상사용권자"라 함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은 별표1과 같으며, 사용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용료율) 상표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정산) ①시장은 제3조의 형상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하는 요율에 의한다.

- ②사용료 산정 및 정산,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할시는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적인 사용료의 징수 : 사용계약후 10일이내
 3.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용료 징수 :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

제6조(사용료 징수대상) ①제3조의 형상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사용함으로서 상품 가치를 제고하는 경우

②기획사와 라이센스 계약체결후 제작판매 상품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단순히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또는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상표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원권자의 위상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
2. 기타 시장이 상표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상표권의 사용계약) ①제천시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기타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상표권사용 심사) ①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천시상표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제7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전용사용권의 보호) 시장은 전용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장등록등 협의) ①제천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 출원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 내용은 제천시와의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캐릭터 사용 전담부서 지정) ①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캐릭터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캐릭터 사용 전담부서(문화관광과)를 지정하고 이하 모든 부서에서의 캐릭터 사용 및 타인, 타기관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은 사용전에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사용한다.

②캐릭터 사용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없이 일반인 및 타기관등에 사용을 허락하여 사용케 할 경우 그 상표의 사용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4조(상품의 제작 및 판매) 시장은 제천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시재정 확충을 위해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방법은 직접판매, 위탁판매로 한다
2. 판매금액의 이익금은 직접판매의 경우 제작원가의 20%이내로 하며 위탁판매의 경우 50%이내의 범위내로 산정하여 정하되 이익금중 50%는 시 수입으로, 50%는 위탁판매업소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3. 정산방법은 매월말 또는 매분기말로 정산하여 10일 이내 징수한다

제15조(사용료 및 판매이익금 처리)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된 사용료와 판매 이익금은 제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부 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제7조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 제천시 캐릭터의 인지도 제고와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 및 이미지 제고 등 침체된 관내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사용 전담부서에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단, 농·수·임업과 관련된 농민 단체, 조합, 작목반 등으로 한정하며, 별표2상의 30, 31, 33 상품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제13조와 관련 조례제정 이전에 이미 일반부서의 사용허락을 득하고 사용중인 캐릭터에 관하여는 조례시행일로부터 1달이내에 캐릭터 사용 전담부서에 사용허가를 득한 단체에 한하여 캐릭터 사용을 인정하되, 무료사용의 경우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자 및 단체에서 이미 사용중인 캐릭터에 대하여는 캐릭터 사용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별표1)

등록상표의 형상(제3조 관련)





(별표2)

상표사용 허가증 및 사용요율(제3조, 제4조 관련)

분 류		상 품 세 목	사용요율
상품류	상 품 군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 등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촛대, 귀금속제 쟁반, 귀금속제 재떨이,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걸이, 메달, 목걸이	전당 제품제작 원가 또는 판매 이익금, 생산(판 매)단가의 1.5%
제16류	종이, 판지 및 이들 의 제품 등	공책, 봉투, 메모지, 수첩, 스케치북, 그림엽서, 연하장, 불펜, 달력, 필통	"
제18류	피혁과 모조피혁 및 그 제품, 우산, 양산, 지팡이 등	학생가방, 우산, 양산, 지팡이,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백, 등산지팡이, 피혁제벨트, 배낭	"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제품 등	시장바구니, 부채, 방석, 쿠션,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목제조각, 밀랍제조각, 플라 스틱제 조각, 공기팽창식 광고물	"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모자, 넥타이, 스카프, 양말, 운동용 유니폼, 티셔츠, 잠옷, 목도리, 아동복, 유아복	"
제28류	오락 및 유희용구, 운동용품, 장식품 등	고무제완구, 금속제완구, 마스코트 인형, 플라 스틱제 완구, 풍선, 세트완구, 모빌, 목제완구, 완구용 공, 지제완구	"
제30류	쌀, 곡분 및 곡물 제제품 등	쌀, 고추장, 된장, 약과자, 국수, 냉면, 옛, 떡, 도토리묵, 매밀묵	"
제31류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 등	사과, 고추, 오이, 느타리, 더덕, 생강, 황기, 당귀, 홍화, 상치	"
제33류	알코올음료	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메실주, 동동주, 포도주	"
제35류	<서비스업류>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광고디자인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간행물광고업, 광고대행업, 광고물출판업, 옥외광고업, 광고문작성업, 광고기획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판임대업	"
기 타		상기 명기한 상품 이외의 상품	"